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신혜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527호
- 나. 제 안 자 : 이신혜의원외 26명
- 다. 제안일자 : 2016년 11월 16일
- 라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고용 없는 성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. 이에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예를 들어 구직자를 대상으로 ‘정장대여, 프로필사진촬영, 헤어스타일링’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, 이 같은 사업들은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에 해당됨.
- 그러나 ‘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’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.
- 이에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청년 구직비용 절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11조제2항 신설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서울시의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의 현황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‘청년일자리 종합계획’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으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‘취업날개 서비스’, 취업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‘일자리카페’ 조성, ‘일자리 해커톤’ 개최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- 최근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매월 외모관리에 평균 14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, 지출항목으로는 ‘피부관리’(23.2%), ‘헤어스타일 변화’(22%)에 앞서 ‘정장 등 의류 구입’(30.1%, 복수응답가능)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, 청년들이 구직을 위한 정장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음.(2016.09, 취업포털 사람인)
-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시는 청년 취업자들의 취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‘취업날개서비스’라는 사업을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음.
- 취업날개서비스는 KEB하나은행이 시와 협약을 맺은 뒤 공유기업인 ‘사단법인 열린옷장’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 18~34세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구직자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임.
-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‘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’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(사)열린옷장에 직접 방문하여 정장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1인당 연 2회까지 방문이 가능함.

▶ (사) 열린옷장 개요

- 설립 : 2012년 7월
- 대표자 : 한만일, 김소령
- 위치: 광진구 아차산로 (건대입구역 1번출구 150m)
- 운영시간 : 월~토요일 10:00~18:00 일요일, 공휴일 휴무)
- 보유 의복 : 약 3,000벌 (정장 800벌)
남성 110~115, 여성은 88~99 사이즈까지 구비
보유 정장은 증정(기부)와 구매를 통해 확보함

-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(사)열린옷장을 통해 취업날개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남자 941명, 여자가 1,651명으로 총 2,592명임. 특히, 기업들의 공채면접이 몰려 있는 5월과 10월 더 많은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, 올 연말까지 약 4천명의 이용객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<취업날개서비스 이용객 현황>

(단위 : 명)

구분	계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
총 이용객수	2,592	72	536	458	368	349	275	534	
성별	남	941	22	204	174	110	137	122	172
	여	1,651	50	332	284	258	212	153	362

다. 개정안의 타당성

- 현재 ‘취업날개서비스’는 KEB하나은행의 기부금 1억원을 통해 운영하는 단기 사업형태로 내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하여 추진될 계획이었음.
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시 예산으로 운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추진이 불가능함. 그러나 ‘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’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. (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)
-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인 ‘취업날개서비스’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대상, 방법 등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,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년구직자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라. 사업추진방향

- 이 같이 청년구직자의 정장대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는 청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의 구직자들을 위해 현재 18~34세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날개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상향시키고, 연 2회로 제한된 대여횟수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.
- 아울러, 현재 운영하고 있는 ‘(사)열린옷장’의 경우 ‘광진구 아차산로’ 부근으로 지역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,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정장대여공간을 확대 운영하거나 직접방문 외의 택배서비스 이용 등 해당 사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.

※ 현재 정장반납은 택배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, (사)열린옷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장대여의 경우는 대여 시에도 택배 이용이 가능함.

마. 종합의견

-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면접에 꼭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, 취업날개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, 구직자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면접정장 대여사업 이외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.